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해 헌신·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(안 제5조제2항)
- 나. 용어 정비 및 조례의 기존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제1항, 제6조제1호 및 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 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6. 8.~ 6. 2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(☎2133-7330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말소, 타 시·도”를 “주민등록이 말소, 타 시·도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당 지급액은 월 <u>10만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6조(수당의 지급중단)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사망 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<u>말소, 타 시·도</u> 전출한 경우</p> <p>2.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<u>자격 변동이 확인된 경우</u></p>	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5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수당의 지급중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주민등록이 말소, 타 시·도로</u> ----- <u><삭 제></u></p>

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참전명예수당)를 개정함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어 추가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전제

- 참전유공자 인원은 최근 3년간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연 평균 6.4% 감소율을 적용하였으며, 기존 연 지급액 48,000백만원을 제외한 추가 금액을 추계함
- 정액수당으로 1인당 지급액은 150,000원으로 변동없음을 전제함
-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함

나. 추계기간 : 5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56,502,29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세입	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급비용 (안 제3조)	19,392,000	15,078,912	11,041,862	7,263,182	3,726,339	56,502,295
	총 비용(b-a)	19,392,000	15,078,912	11,041,862	7,263,182	3,726,339	56,502,295

4. 재원조달 방안 : 전액 시비(일반회계 편성)

5.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참전유공자 현황

-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'20년~'23년(3년간) **평균 6.4% 감소하고 있음**

(단위: 명)

구 분	'20.3월	'21.3월	'22.3월	'23.3월
유공자 수	51,728	48,576	45,527	42,488
전년 대비	-	△3,152 (△6.1%)	△3,049 (△6.3%)	△3,039 (△6.7%)

※ 출처 : 국가보훈처 통계자료

- '24년~'28년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예상 추이(연 6.4% 감소율 반영)

(단위: 명)

구 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'24~'28)
지급인원	40,000	37,440	35,044	32,801	30,702	28,737	164,724

2.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액

- '24년~'28년 참전명예수당 연간 추가 지급액 총계 ≙ 56,502백만원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'24~'28)
지급인원	40,000	37,440	35,044	32,801	30,702	28,737	164,724
소요예산	48,000	67,392	63,079	59,042	55,264	51,726	296,503
기존 연 지급액 48,000백만원을 제외한 추가비용	-	19,392	15,079	11,042	7,263	3,726	56,502

※ 각 연도별 소요예산 : 각 연도별 지급인원 × 150,000원 × 12월

※ 각 연도별 추가지급액 : 각 연도별 소요예산 - 48,000백만원